

2003. 3. 28(금)
제88회임시회제4차본회의

심 사 보 고 서

- 제천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총 무 사 회 위 원 회

제천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인에 대한 수정안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3. 15. 제 천 시 장
- 나. 회 부 일 자 : 2003. 3. 18.
- 다. 수정안상정일자 : 2003. 3. 21. (제8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회의)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과정 김재식)

가. 제안이유

- 종합석차에 의한 장학생 자격 기준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종합 생활기록부관리지침에 의해 종합석차제도 폐지로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
-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에 대한 구체적 기준설정
- 제8조 제1항 제1호를 삭제한다.

나. 수정이유

- 안 제2조 1항에 의하면 품행이 단정하고 학과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의거 산정한 과목별 평균 환산점 3.0 이상인자라고 규정함은 교육관계법령의 근거가 확실치 않으며, 안 제2조 2항의 기능·체육·예능에 소질이 있는 자로서 도 단위 3위 이상 입상한자로 규정한 것은 학업성적 우수자 선발 기준과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일부조항을 수정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장학생의 자격기준을 과목별 점수의 평균환산점 3.0 이상인 자로 개정
-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에 대한 기준을 도 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자로 기준마련
-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조항을 통리장직을 상실하였을 때로 구체화 함.

라. 수정주요골자

- 안 제2조 1호 “품행이 단정하고 학과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의거 산정한 과목별 평균환산점 3.0이상인자, 단 신입생의 경우 입학성적이 100분의 50이내인자”를 “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 또는 학과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의거 산정한 과목별 평균 환산점 3.0 이상인자. 단, 학년석차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 개인 평균성적이 100분의 50 이상인자”로 안 제2조 2호중 “도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3위이내 입상한자”를 시 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자“로 수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후준)

가. 법적검토

- 이 조례가 통리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1997. 12.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생활기록부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 558호)제19조를 개정하면서 학업성적은 기존의 종합 석차 제도가 폐지되고 학업성취도 평가에 의한 과목별 수, 우, 미, 양, 가로만 표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장학금지급 대상자의 성적산출 방법도 학업성취도 평가에 의한 과목별 석차제도로 정비하여야 함은 타당하다 할 것이나, 별표의 학업성적 평점환산표에 의한 평가 방법은 교육관계 법령의 근거하여 작성되어야 할 것이며, 2003. 2. 15 ~ 3. 6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걸쳐 2003. 3. 13일 제천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가결사항으로 법규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나. 행정적 검토

- 조례 제2조 1항은 교육관계법령의 근거가 명확할 때까지 현행 개인평균 성적인 100분의 50인자와 별표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는 안도 검토대상이며,
- 조례 제2조 2호 기능·체육·예능에 소질이 있는 자로서 도 단위 3위이상 입상한자로 규정한 것은 학업성적 우수자 선발기준과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음.
- 조례 제8조 1항 1호 “보호자인 통리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때” 투명하지 못한 조항으로 삭제됨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조례 제8조 1항 2호 “장학금을 지급 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의 조항도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며 현실에 맞지 않은 조항이므로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라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가. 질의요지

- 이 조례안은 통리장의 복리와 사기양양을 위해서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 제2조2항을 보면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의 소질과 같이 재능이 뛰어난자로서 도 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자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도 단위 이상에서 입상하기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김성진 위원)
- 조례안 제2조1항의 내용도 현재 교육관계법이 개정되지 않았는데, 상위법에 근거없이 본 조례안을 개정하여 시행한다면 장학금 선발 기준에 결격이 되는 대상자가 발생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김진학 위원)
- 검토의견을 보면 장학금 지급의 정지관계에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존치 시킨다면(김진학 위원)

나. 답변요지 (자치행정과장 김재식)

-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매년 기준점에 도달하지 못한 대상자는 별로 많지 않지만, 이 분들을 위해 좀 완화시켜 주는 차원으로 간다면 합니다.
- 수우미양가 부분에서 미 이상이기 때문에 대개 개인 평균성적 100분의 50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다소 피해를 볼 수 있는 소지가 조금 있다고 봄.
-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길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의적 해석이라기 보다는 충분히 재량권이 있다고 판단되며, 존치시켜도 큰 문제가 되는 조항이 아님. 중앙에서 검토될 때 이 부분도 다시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음.

5. 소수의견

“없 음”

6. 토론요지

- 제2조 1항에 의하면 품행이 단정하고 학과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의거 산정한 과목별 평균 환산점 3.0 이상인자라고 규정함은 교육관계법령의 근거가 확실치 않으며, 안 제2조 2항의 기능·체육·예능에 소질이 있는 자로서 도 단위 3위 이상 입상한자로 규정한 것은 학업성적 우수자 선발기준과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일부조항을 수정할 것을 제안 함.

7. 심사결과

- 김성진위원 수정안 발의(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
- 수정안 표결결과
 - 출석위원 7명중 찬성 7명으로 가결(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8. 심사보고 붙임서류

- 제천시통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부